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_ 규칙 제40조(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구분	74A	74B	84A	84B	99	계
총 세대수	224	24	144	75	377	844
배정 세대수	22	2	14	7	37	82

구분	내용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오산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有(6개월) ㉢ 만19세 미만 자녀 2명(태아, 입양자녀 포함)이상인 자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오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 ※ ②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청약통장	주택형 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청약 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 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유의사항	※ 미성년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입양자녀 포함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규칙 제40조 제3항) ※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본인(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함.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세대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인허가·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해당 공급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합니다.